

## 주주명부 폐쇄기준일 및 폐쇄기간 공고

상법 제354조 및 우리 회사 정관 제12조에 의거하여 2016년 12월 3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며, 권리주주 확정을 위해 2017년 01월 01일부터 2017년 01월 31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, 질권의 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,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변경을 정지함을 공고합니다.

2016년 12월 14일

경남 창원시 진해구 남의로 57

영화금속 주식회사 대표이사 사장 최 동 윤

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유재훈